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 통합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연구진 이창현 선임연구위원 hyun@jd.re.kr

연구진 김광국 연구원 walseykim@jd.re.kr

Chapter 1 |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이란?

Chapter 2 | 기존의 지역개발제도의 한계와 제도개선 방안

Chapter 2 | 전북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영향력

Chapter 2 | 정책적 제언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공청회와 언론(아주경제)자료를 참조한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2월 28일 vol.30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 통합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Contents

Chapter 1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이란?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2. 통합대상 지역개발제도	3
Chapter 2 기존의 지역개발제도의 한계와 제도개선 방안	
1. 지역개발제도와 한계	5
2. 지역·지구 지정실태	6
3. 제도개선 추진방안	11
Chapter 3 전북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영향력	
1. 시·군별 지역개발사업 지정 수준	13
2. 지역개발사업별 추진실태 진단	14
Chapter 4 정책적 제언	
1.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준비	15
2.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중앙부처의 준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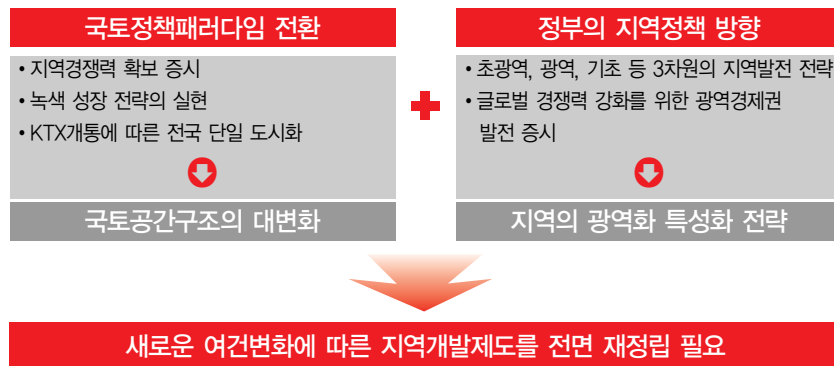
Chapter 1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 이란?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자립적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제도적 장치임

▶ 이는 정부 각 부처(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 걸쳐 다수의 제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적인 지역개발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법률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2. 통합대상 지역개발제도

▶ 통합지원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 관련 법률을 위시하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소관 38개 법률을 대상으로 함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소관 법률이 가장 많은 18개 법률

에 28개 지역·지구가 존재함

〈표 1〉 각종 지역개발 법률 및 지역·지구 현황

소관부처(청)	관련 법률(개)	지역·지구(개)	지정면적(km ²)
국토해양부	18	28	106,234.70
지식경제부	8	8	1,261.50
행정안전부	3	3	7,926.00
농림수산식품부	3	6	466.50
문화체육관광부	3	5	3,730.00
교과부·보건부·중기청	3(각 1)	3(각 1)	420.61
합계	38	53	120,046.10

자료) 국토연구원, 실질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법률' 제정 공청회 자료, 2010.12

〈표 2〉 지역개발 관련 제도와 우선통합 정비대상 법(안)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원 발전 특별법 	우선 통합 정비대상
특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항만 건설 촉진법/항만법/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법/택지개발 촉진법 등 	

▶ 국토해양부의 지역개발 관련 제도가운데 종합개발 관련제도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동서발전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을 우선 통합 정비대상으로 하며, 특정산업의 육성¹⁾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²⁾는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1) 특정산업육성 관련제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항만 건설촉진법, 항만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등

2) 도시개발 관련제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 「동서발전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표 3〉 통합검토대상 지역개발제도별 비교

구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지역지구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목적	광역적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및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	주거, 산업 등 단지외기반시설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형 지역개발	낙후지역의 민간투자 촉진	지역간 교류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절차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준공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실사계획승인→준공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실사계획승인→준공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실사계획승인→준공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실사계획승인→준공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실사계획승인→준공
계획심의	-	-	-	-	신발전지역위원회 (총리소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총리소속)
지정현황 (사업기간)	10개권역 (1994~2011년)	7개구역 (약10년)	전국61개 시군지정 (약10년)	1개지구 (제천)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2008~2020년)	미지정 (2020년까지)
보상시기	실사계획 승인 고시일	실사계획 승인 고시일	실사계획 승인 고시일	실사계획 승인 고시일	지목 등세목 고시일	지목 등세목 고시일
국고지원	-	지구당 평균 5,000억 지원(10년간)	지구당 평균 500억 지원(10년간)	-	지원기준 마련중	시범사업지원
인센티브	조세감면	-	-	취등록세 100% 재산세 3년 50%	법인소득세3년 50%, 2년 25%, 취득등록세 15년 감면	-
	시행사	-	-	-	-	-
	인주기업	-	-	법인소득세 3년 50%, 취득등록세 100%, 재산세 5년 50%	법인소득세3년 면제 2년 50%, 취득등록세 15년 감면	-
부담금감면	-	-	-	-	개발부담금 등 4개 감면	개발부담금 등 4개 감면

자료) 국토연구원, 실질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법률' 제정 공청회 자료, 2010.12

Chapter 2

기존의 지역개발제도 한계와 제도개선 방향

1. 지역개발제도와 한계

▶ 그간의 '공청회자료' 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의 한계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전국 대부분이 지역지구에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 남한면적(100,200km²)의 1.2배에 달하는 지정면적(120,046km²)으로 전 국토가 사실상 개발사업 구역화되어 있음
- 사업이행 정도와 관계없이 지구 지정후 지가는 인근지역에 비해 1.4~3.0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실태에 있음
- 둘째, 중앙부처별 제도 및 정책간 통합적·종합적 고려없이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지원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이에 따라 각각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자체는 국비확보의 창구로 삼고 중첩적으로 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음(3종이상의 지역지구가 지정된 시·군이 71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그림 1〉 이행절차별 소요기간 및 제반업무

- 셋째, 사업내용이 관광휴양사업, 도로사업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인센티브제도가 미흡한 점
- 넷째, 국고지원액은 한정된 반면 지역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정도의 기반시설 정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인을 저해할 복잡한 절차로 장기간의 선행계획 수립 소요기간을 요구해 왔음

2. 지역·지구 지정 실태

- ▶ 전라북도내에 지정된 우선 통합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역·지구는 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2), 개발촉진지구와 지정예정인 특정지역(1)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구역, 초광역권(서해안권 등) 사업 등이 분포함

▶ 광역권개발계획

- 제도개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 성격보유
 - 네 차례(제1차 국토계획~제4차 국토계획)에 걸친 국토계획을 통해 10대 광역권(대도시권 - 대전·청주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부산·경남권 / 신산업지대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 연담도시권 - 강원 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지정
- 실태
 - 전라북도는 신산업지대로서 군산·장항권에 해당되며, 면적 3,100km²에 군산, 익산, 김제 외 충남의 보령, 부여, 서천, 논산이 포함됨

▶ 특정지역

- 제도개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특정지역 제도는 문화·관광 등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규모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제도임
 - 특정지역은 타 지역개발제도와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모를 500km²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이내로만 지정
 - 특정지역의 유형으로는 문화관광권형(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 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산업전환지대형(주요산업·기반시설의 이전, 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특수입지형(자연·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 국가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 필요 지역) 으로 구분
- 실태
 - 전라북도의 경우 1993년 6월 11일 전국 최초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과 함께 지정된 백



〈그림 2〉 광역권개발계획

제문화권에 익산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 전라북도 행정구역내 2007년 12월 31일 지정·고시된 '전북 해양농경역사문화권' (면적 1,066km², 전라북도 전역의 13.2%)이 분포함

〈표 4〉 이행절차별 소요기간 및 제반업무

구분	백제문화권	전북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지리산문화권
근거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정년도	1993. 6. 11	2007. 12. 31	(지정예정)
대상지역	익산시 외	김제,부안,고창,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외
면적	1,915km ²	1,066km ²	951.2km ²
사업기간(계획상)	1994~2005	2010~2019	2009~2018
투자비(계획상)	2조 8,225억원	7,528억원	1조 5,193억원

- 아울러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지정예정인 '지리산문화권'의 경우 951.2 km²(전북 254.9km²)에 걸쳐 40개 사업이 지정·예정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지역의 경우 1개 지역당 5,000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 기 지정 특정지역(지정예정 1개, 지정 신청중 2개)에 투자된 사업비가 1,041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미진한 상태임



〈그림 3〉 특정지역 지정(예정) 현황

▶ 개발촉진지구

- 제도개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광역자치단체별 행정구역의 20%범위내 규모에 지정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
 -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으로는 낙후지역형(탄광지역 등), 균형개발형(아산만권, 백제문화

권 개축지구), 도농통합형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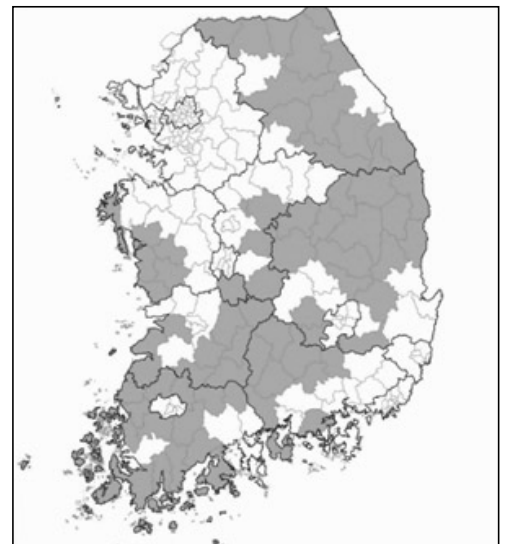
• 실태

- 전라북도의 경우 1차(1996~2015년) 진안·임실을 시작으로 2차(1998~2015년) 장수군, 3차(2000~2008년) 순창군, 4차(2000~2010년) 고창군, 5차(2002~2014) 무주 외에 남원시, 김제시가 추가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부안군이 지정·신청중에 있음
- 2006년까지 4개지구 10건이 완료되어 2,566억원이 투자된 바 있으며, 매년 200억원 내외 국비사업비 확보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전체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25%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당초 201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되어 오다가 2014년까지 연장된 상태에 있음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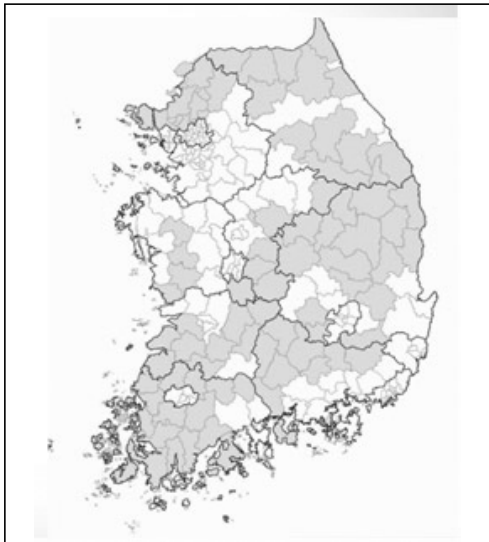
- 신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과 기존 낙후지역 관련제도의 문제(지역특성 반영 미흡, 소규모 분산투자, 민간투자 미흡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 마련차원에서 탄생
-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신발전지역의 내생적 발전동력 구축하여 낙후지역의 자생적 경제기틀을 구축하고자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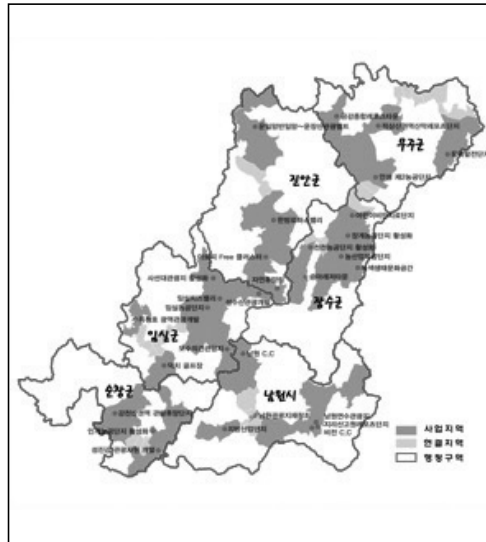
〈그림 4〉 개발촉진지구 지정(예정) 현황

• 실태

- 전국 최초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국토해양부)은 2008년 12월 30일에 목포시·무안군 등(총면적 1,216km² / 목포시 47.9km², 무안군 436.3km², 신안군 654.4km², 영암군 7.9km², 해남군 54.3km², 진도군 15.3km²)을 중심으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경북(2)·충북도 등과 함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계류중에 있음



〈그림 5〉 신발전지역 구역 지정 및 지정예정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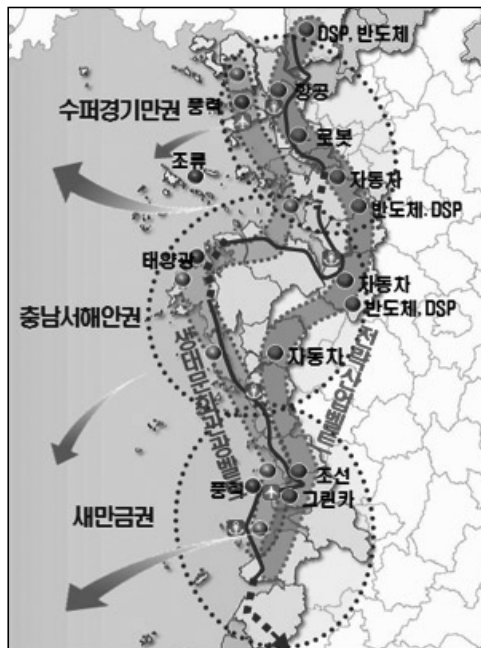
〈그림 6〉 지덕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안)

- 전라북도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지덕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명명하고, 지정 신청면적은 1,152.4km²(국토면적의 1.36%, 전라북도 행정구역 면적의 16.69%, 6개 시·군 행정구역 면적의 35.42%에 해당)이며, 관광휴양단지부문(1조 3,000억원, 76.5%), 생태·신재생에너지부문(1,300억원, 8.8%), 산업·농공·물류단지부문(1,300억원, 7.6%), 향토자원 정비·개발부문(1,200억원, 7.1%) 등 총 1조 7,000억원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해안권 및 내륙권개발구역(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 제도개요

- 정부의 3차원적 지역정책(기초,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하나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여,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축으로 육성하고자 전략별 개발사업을 마련



〈그림 7〉 서해안권 공간발전 구상도

- 실태
 - 3개 해안권역(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가운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166개 사업에 총 24.3조 원(민자포함)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 전라북도가 해당되는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전라북도의 2시·2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을 비롯하여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25개 기초자치단체를 공간범위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심의 결정한 바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42개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1개소씩(전북 :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사업)선정함에 따라 우선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중에 있음

3. 제도개선 추진방안

- ▶ 공청회 내용 및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통해 유사한 계획 및 구역(지구)를 지역개발통합계획 및 단일 지역개발구역(투자선도지구)으로 통합
 - 기존 3개 법에 의한 종합계획(개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5년단위의 '지역개발통합계획'으로 단일화
 -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개발구역을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운영
- ▶ '지역개발구역'에서 구역의 지정은 기존 법에서 사업계획구역보다는 행정구역 최소단위(동, 리)로 연결되는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구역 등을 지정해 왔던 방식과 달리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만을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지정면적을 최소화
 - 다만, 지역개발구역의 지정면적은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지역 지정시 적용되어왔던 행정구역 면적의 20%이내 지정범위를 10% 수준 이내로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
 - 지역개발구역가운데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
 -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KTX역세권개발 지원사례와 같이 특별건축구역지정특례(건폐율, 용적율, 높이, 건축선, 주차장 등 특례), 선택적 규제 특례인정(외국인 투자기업 특례 등), 기반시설 지원확대(문화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대상 시설 다양화, 광역계정상 국가지원비율 확대),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을 담고 있음



〈그림 8〉 투자선도지구 지원특례(예시)



〈그림 9〉 투자선도지구 지원특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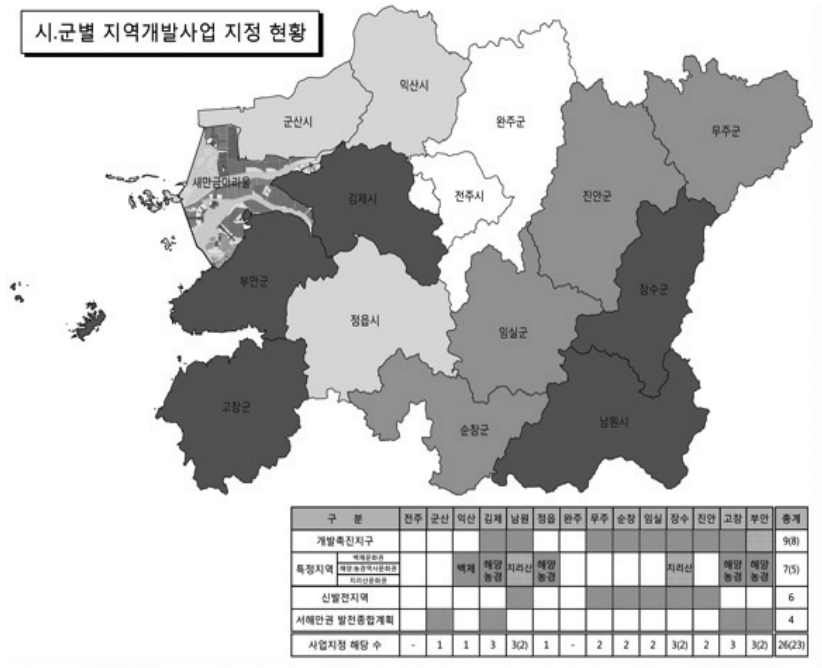
- ▶ 기존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로 신법 시행후 일정기간 외에
 - 기존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은 신법의 사업지구로 인정하고 구법 적용을 통해 계속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계획은 신법 시행후 3년간 유효하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과 '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은 계획기간까지 유효하며, 기존 사업중 시행중인 사업은 기존 법에 의해 계속 시행이 가능하되 다만, 미 착수사업은 법안 공포후 3년간 유예
- ▶ 그 외에
 -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체제로 개편키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에 의한 사업입지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허가 및 투자유치의 윈스톱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지역개발 통합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함
 - 토지수용 요건의 완화(면적 2/3이상 매입 또는 소유자 2/3이상 동의) 및 공급용지의 처분·공급방법·시기 등을 자율화하는 등 부지확보와 조성·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함
 - 부처협의 기간을 단축(0.5~1년 → 1~3월)하고, 개별부처 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를 통해 일괄조정이 가능토록 하며, 52개 법률의제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인허가 의제를 둠

Chapter 3

전북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영향력

1. 시·군별 지역개발사업 지정 수준

-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백제문화권,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지리산문화권), 신발전지역,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사업 대상이 되는 시·군은 최소 1개 · 최대 8(9)개소가 존재함
 - 개발촉진지구는 김제시, 남원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와 신규로 부안군이 준비중에 있어 9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정(예정) 분포함
 - 특정지역은 백제문화권(익산시), 해양농경역사문화권(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지리산문화권(예정 - 남원시, 장수군), 신발전지역(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이 각각 해당됨
- ▶ 시·군별로는 지정예정인 지리산문화권과 신청예정인 개발촉진지구(부안군)를 포함할 경우 남원시, 장수군, 부안군이 각각 3개 계획,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각각 2개 계획이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분석



- 2개 이상 지역개발사업(계획)이 분포하는 지역은 전북 동부권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중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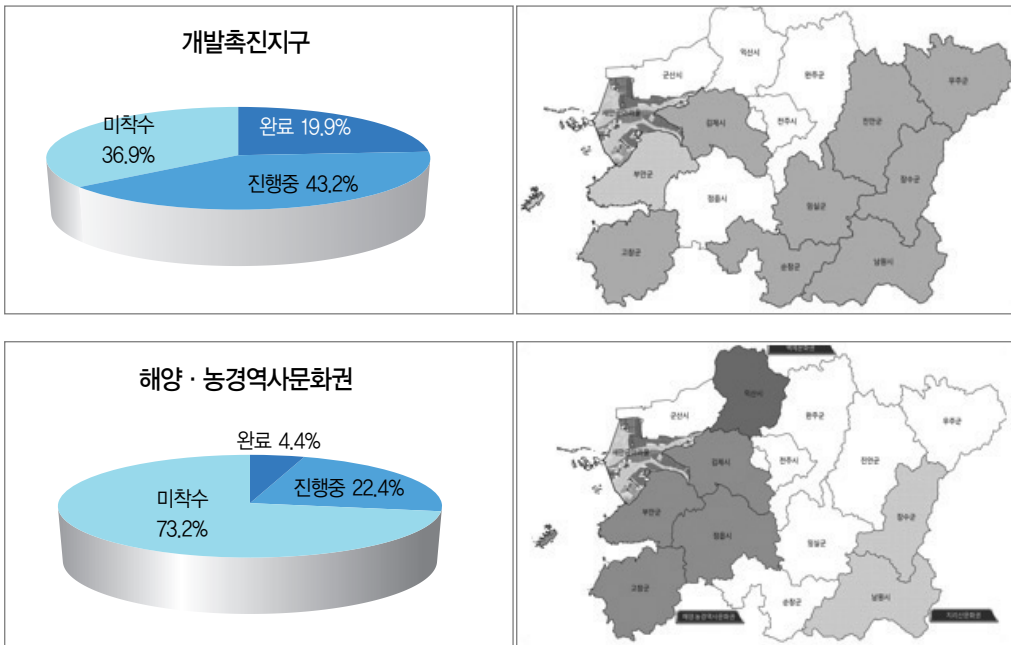
2. 지역개발사업별 추진실태 진단

▶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996년 이후 2010년까지 4,917억원이 투자되어 매년 331억원의 지속 투자효과를 발휘해 왔음

- 시·군별로는 - 김제(1,782), 남원(872), 무주(472), 고창(362), 순창(274), 임실(130), 진안(746), 장수(334억원)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있는 사업에 해당
- 전체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0년 현재 사업수(77개 사업중 26개 사업 완료, 20개 사업 진행중) 기준 59.8%, 사업비(1조 8,391억원 중 완료 3,659억원, 진행 7,945억원) 기준 63.1%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해당됨

▶ 2007년 12월 31일 지정·승인되어 사업추진 준비기간이 짧았던 해양농경역사문화권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36억원이 투자되어 매년 245억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해 왔으며, 매년 동일 수준의 사업비 투자가 전망됨

- 2010년 현재 사업수(30개 사업중 2개 사업 완료, 7개 사업 진행중) 기준 30.0%, 사업비(7,528억원 중 완료 330억원, 진행 1,687억원) 기준 26.8%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상태임



Chapter 4

정책적 제언

1.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준비

- ▶ 기존 계획 및 기정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풍부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분석하여 신법 제정 및 효력발생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진단되어야 함

 - 사업실현성 진단은 첫째, 사업자체가 실제 실현 가능한지를 재진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둘째, 신법에 의한 경과조치(신법 시행후 3년간 유예 및 미 착수사업의 법안 공포후 3년간 유예)가 기정 사업중 실제 실행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인가를 투입 자원 확보 여부와 연계하여 진단 필요
- ▶ 신법 제정을 계기로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분산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시행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야 함

 - 성공적 모델개발을 통해 전라북도만의 성공모델을 창조해 감으로써 각 부처에 시범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만들어 가야하며, 신 법의 제정을 통해 선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따라서 국토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지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역입장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고 모범적인 시범사업 제안 하므로써 전국적 수범 사업을 창조하고 국비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필요

2.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중앙부처의 준비

- ▶ **(시범사업)**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모델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요구되며 사업을 지원하는 국비보조 비율의 구체적인 명시와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 예산확보가 요구됨
- ▶ **(국비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의 명백한 근거 제시가 요구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는 물론 국고지원대상 확대와 하위법령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요율 및 지침의 구체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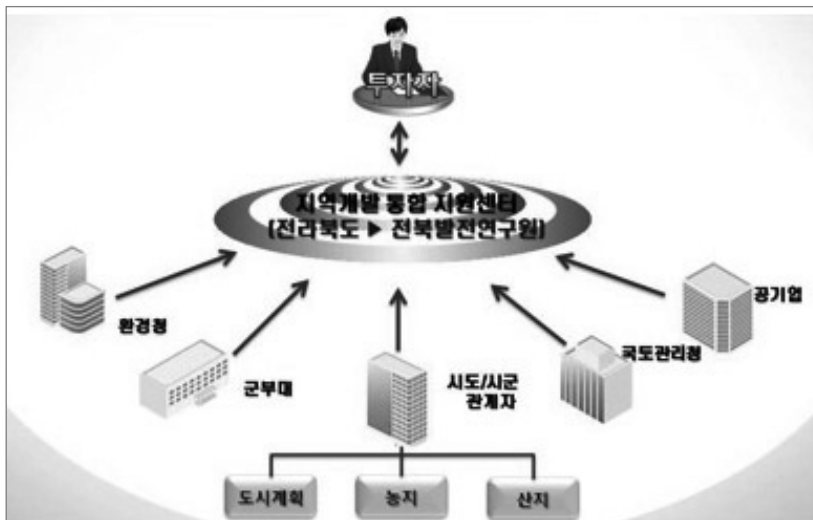
➡ (경과조치) 기존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경과기간(3년)의 조정 필요

- 경과조치의 구체적 설정은 기존계획 및 지정사업들이 현행법의 한계³⁾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탄생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례(case by case)분석을 통해 경과조치 기간에 설정에 심사숙고해야 함(예컨대 3년을 5년으로 연장 등 검토)

➡ (의제설정 및 인센티브) 현재의 지역개발 관련 법에서 보장되어 왔던 의제와 인센티브 각각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다운 제도를 강구해야 함

➡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지역개발구역 지정에서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의 지방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지역개발지방위원회’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은 광역자치단체내에 두되, 그 산하(시·도 출연연구기관)에 ‘지역개발통합지원서비스센터’를 두어 공신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를 활용



〈그림 10〉 지역개발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직도(안)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당해 법에 의거하여 수립 지정·고시된 특정지역개발계획(예/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의 경우 당해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포함된 사업들이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가름되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된 사업들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진행되어야 하거나 광특회계에 의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 계획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시군에게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비일비재한 실정임. 이는 제도가 낳은 문제로 인해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기 확정된 사업을 해당 기간내 실시설계를 준공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조사에 의한 경과조치 기간 재 고려가 요구됨